

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(이하 본교) 교육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)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·직계자녀 장학금

본교 및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재직 중인 전임교원·정규직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자녀로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

가. 교직원 본인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

나.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
다.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※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(명예퇴직 포함)시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가 본 교육대학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

2. 학교법인 동아학숙 산하 수익사업체 직원 장학금

학교법인 동아학숙 산하 수익사업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자녀로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

가. 직원 본인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

나.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
다.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※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(명예퇴직 포함)시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가 본 교육대학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

3. 동아의료원 직원 장학금

동아의료원에 재직 중인 의료직, 정규직, 직무직 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자녀로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

가. 직원 본인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

나.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
다.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※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(명예퇴직 포함)시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가 본 교육대학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

4. 동아인 장학금

본교 학부 졸업생으로 교육대학원 입학 시 교원자격증(2급) 취득 미희망자에게 수업료의 30%를 지원한다. 단,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- 가. 입학 기준으로 교원자격증(2급) 이수를 희망 하지 않은 입학생에게 지급한다.
- 나. 재학 중 본 장학금을 수령하다가 교원자격증(2급)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.
- 다. 재학 중 교원자격증(2급) 취득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교직과목 미수강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.

5. 현직교원 장학금

교원자격증(2급 이상)을 소지한 현직 교원에게 수업료의 30%를 지급하며 현직 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
- 나.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원장
- 다. 현직교원의 기준은 1학기는 3.1자, 2학기는 9.1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.

6. 공무원 장학금

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 자에게 수업료의 30%를 지급한다.

단, 신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.

7. 교육조교 및 근로학생 장학금

- 가. 본교 교육조교로 근무하는 자의 당해 학기 장학금은 본교의 「조교 인사 규정」에 따라 지급한다. 단, 등록금 면제 복학자가 교육조교로 발령될 시 지급하는 장학금은 휴학 직전 학기에 납부한 수업료로 한다.
- 나.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자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- 다. 근로학생은 국가근로장학생 근무기준시간을 적용한다.
- 라. 교육조교 및 근로학생이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시에는 수혜 받은 장학금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8. 가족장학금

본교(학부, 대학원)에 2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(등록)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

- 가. 2인 등록 시 수업료의 20%를 지급한다.
- 나. 3인 이상 등록 시 수업료의 30%를 지급한다.

9. 군위탁생장학금

교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입학한 군위탁생에게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
10. 희망장학금

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급한다. 단, 당해학기 장학금의 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 할 수 있다.

11. 성적 우수 장학금
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이 90점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해당 전공에서 추천된 자에게 수업료의 30%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

단, 당해학기 장학금의 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 할 수 있다.

12. 장애학생장학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의 정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.

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
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수업료의 30%를 지급한다.

13. 양육학업장려장학금

만6세 이하(매학기 개강일 기준)의 자녀가 있는 재학생에게 500,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

14. 비교과 우수 장학금

교육대학원 비교과 우수 장학금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, 매 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 실적이 우수한 양성과정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, 지급금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한다. 단, 당해학기 장학금의 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 할 수 있다.

제4조(장학생의 선발)① 제3조1호부터 9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.

② 제3조10호에 해당하는 장학생과 장학금액은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

③ 제3조1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과 장학금액은 해당 전공 전공회의를 거쳐 선발한다.

제5조(장학금 지급제한)① 장학금 지급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, 동일 수혜기간에 중복지급하지 않는다. 단, 교육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급 할 수 있다.

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지급을 제한한다.

1. 휴학 중인 자

2. 학칙을 위반한 자

3. 대학원학칙 제57조(징계)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

제6조(준용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.9.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.4.2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5.11.2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. 5. 6.부터 시행한다.